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4년 12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 등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의 단위사무명 변경 등 관련조문 정비

○ 지방 세외수입 징수법 시행(2014. 8. 7)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를 위해 읍·면에 일부사무 위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95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위임대상 정비(안 제2조)

○ “읍면장” ⇒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

다. **위임사무(권한위임) 정비 및 신설(안 제2조 별표)**

○의회사무과장 위임 사무(임용권에 관한 사항) 중 단위사무명 정비 및 신설(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법 개정)

- “6급상당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 ⇒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 “전문직 공무원” ⇒ **“임기제 공무원”**
- **전문경력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관리운영직군 공무원 등에 대한 임용사항 신설**

○지방세법에 관한 사항 중 읍·면 위임사무 신설

-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 업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등) 및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 지방재정법 제62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입법예고 : 생 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외대상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를 “「지방자치법」제104조”로 한다.

제2조 중 “읍면장”을 “읍·면장 및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임 사 무 명(권한위임) (제2조 관련)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임 기 관
총 무 행 정	1. 소속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연가, 병가, 공가, 특별 휴가의 처리	성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9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읍면
		2. 읍면업무담당주사보직발령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읍면
		3. 읍면직원 소내 전보	〃	읍면
	2. 임용권에 관한 사항	1. 6급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신규·전보· 승진임용(상당계급승진), 징계, 면직 등 전반	지방자치법 제91조	의회 사무 과장
		2.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기간연장	〃	의회 사무 과장
		3.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의회 사무 과장
		4. 전문경력관, 전담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행정 직군 속기직렬·방호직렬 공무원 및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위생직렬·조리직렬·간호조무 직렬·운전직렬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에 대한 신규임용, 전보 임용,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에 관한 사항	지방자칭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별표7의2)	의회 사무 과장
새마을행정	1. 군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 중 다음의 권한	1. 대부대상자 추천	성주군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제4조	읍면
		2. 자금의 회수	성주군새마을소득 사업운영관리조례 제8조	읍면
		3. 사업지도감독	같은 조례 제9조	읍면
재 무행 정	1.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1. 지방세 징수	지방기본법 제6조	읍면
		2.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6조	읍면
		3. <삭제 2010. 5.27>		읍·면
		4. 고지서 송달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임 기 관
		5.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송달 및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지방재정법 제62조	읍·면
		6. 지방세 부과 <신설 2007. 8. 2>		
		가. 취득세 자진신고 (단, 이륜자동차)	지방세법 제20조	읍·면
		나. 취득세 부과 (단, 직권부과대상)	지방세법 제21조	읍·면
		다. <삭제 2010.12.31>		읍·면
		라. <삭제 2010.12.31>		읍·면
		마. <삭제 2010.12.31>		읍·면
		바. <삭제 2010.12.31> 사. 지방소득세 소득분 부과(단, 수시분) 아. 주민세 재산분 (단, 직권부과대상) 자. 지방세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	 지방세법 제90조 및 제94조 지방세법 제8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읍·면
		※ 2011.1.1이전의 라·마·바호의 등록세·주민세·사업소세의 추징분은 종전의 위임규정에 따른다.		
	2. 재무회계규칙중 다음 사항	1. 예정금액 3,000만원 이하의 공사집행	지방재정법 제67조	읍·면
		2. 주민부담 2분의1 이상인 공사집행	〃	읍·면
		3. 3,000만원 이하의 공사착공 및 준공검사	〃	읍·면
	3. 물품관리조례중 다음 사항	1. 불용품 매각 처리	성주군물품관리조례 제17조	읍·면
	4. 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 사항	1. 100만원이하 보조금 관리	성주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17조	읍·면
환경 행정	1.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1. 수수료 부과·징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3항	읍·면
	2. 공중화장실에 관한 다음사항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유지관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읍·면

구 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 임 기 관
사 회 행 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	1. 삭제 < 2007. 8. 2. > 2. 수급자증명서의 발급 3. 삭제 < 2007. 8. 2. > 4. 삭제 < 2007. 8.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읍·면
	2. 장사등에관한법률 중 다음의 권한	1.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읍·면
교 통 행 정	1. 이륜자동차에 관한 다음 권한	1. 이륜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99조	읍·면
산 림 행 정	1. 산림에 관한 다음 권한	1. 입산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읍·면
건 설 행 정	1. 군도에 관한 다음 권한	1. 점용료 조정징수 및 감면	도로법 제43조	읍·면
민 원 행 정	삭제 < 2007. 8. 2. >	삭제 < 2007. 8. 2. >		